

瑞山市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總務委員會
2000. 3. 22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2000. 3. 14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2000. 3. 14
- 라. 上程日字 : 2000. 3. 22

2. 提 案 說 明 要 旨 (提 案 說 明 : 稅 務 課 長 安 光 來)

가. 提 案 理 由

-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提 案 理 由

- 시세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만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종전에 동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던 세제분과위원회·이의신청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9조).

-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소득세할 주민세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그 소득세할을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함(안제21조 및 제22조의2).
- 매매 등으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 등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함(안 제39조).
- 주행세의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납부, 납입방법 등 주행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5).
-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함(안 제46조).
- 담배소비세 특별징수 시 사무처리비 공제제도 신설에 따른 공제사항을 정함(안 제60조의제3항).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 신설등으로 일부 개선하여야할 사항이 있으므로, 서산시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139 호
의결년월일	2000. 3. . (제 회)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0. 3. 14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9
----------	-----

제출년월일 : 2000. 3. 14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시세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만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종전에 동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던 세제분과위원회·이의신청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9조).
-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소득세할 주민세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그 소득세할을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의2).
- 매매 등으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 등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함(안 제39조).
- 주행세의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납부, 납입방법 등 주행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5).

-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 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함(안 제46조).
- 담배소비세 특별징수 시 사무처리비 공제제도 신설에 따른 공제사항을 정함(안 제60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행정자치부장관 표준안(세정 13401 - 55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00. 1.10 ~ 2000. 1. 30 (20일간)
- 예고결과 : 특이사항 없음

라. 합의·협의 :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

서산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행세

제9조의 제목“(시세심의위원회)”를“(시세심의위원회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중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서산시시세심의위원회와 서산시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로 한다.

- ①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시세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 ③서산시시세심의위원회와 서산시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제2항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 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는 때에는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그 소득세할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2장에 제3절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주행세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서산시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자를 대상으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 판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0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제40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주행세를 징수한 시장은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제46조중 과세표준 및 세율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2만원+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72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72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30
8천만원 초과	1천872만원+8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40

제6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세목) ①(생 략)</p> <p>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내지 3.(생 략)</p> <p style="padding-left: 20px;">< 신 설 ></p> <p>4. 내지 7.(생 략)</p> <p>③(생 략)</p> <p>1. 내지 2.(생 략)</p> <p>제9조(시세심의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u>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②위원회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u>세제분과위원회, 이의 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u>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 의결로 본다.</p> <p>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 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내지 ⑤(생략)</p>	<p>제3조(세목) ①(현행과 같음)</p> <p>②-----.</p> <p>1. 내지 3.(현행과 같음)</p> <p>4. <u>주행세</u></p> <p>5. 내지 8.(현행 4. 내지 7.호와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 <p>1. 내지 2.(현행과 같음)</p> <p>제9조(시세심의위원회 등) ①시세에 관한 <u>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시세심의위원회를 둔다.</u></p> <p>②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서산시과세표준심의위원회</u>를 둔다.</p> <p>③서산시시세심의위원회와 서산시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내지 ⑤(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 신설 ></p> <p>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p> <p>< 신설 ></p>	<p>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지)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그 소득세할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p> <p>④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중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절의2 주행세</u></p> <p><u>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u> <u>서산시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자를 대상으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판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 한다.</u></p> <p><u>제40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u></p> <p><u>제40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u> <u>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u>

현행	개정안
<p><u>< 신설 ></u></p> <p>제46조(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p> <p>(과세표준) (세율)</p> <p>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p> <p>400만원초과 12만원+400원초과</p> <p>1,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16</p> <p>1,000만원초과 108만원+1,000만원초과</p> <p>2,5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27</p> <p>2,500만원초과 513만원+2,500만원초과</p> <p>5,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38</p> <p>5,000만원초과 1,463만원+5,0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50</p> <p>제60조(신고납부 등)</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징수 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후단 신설></p>	<p>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주행세를 징수한 시장은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 송금하여야 한다.</p> <p>제46조(세율)----- ----- ----- -----</p> <p>(과세표준) (세율)</p> <p>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p> <p>1천만원초과 12만원+400원초과</p> <p>1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10</p> <p>1천만원초과 72만원+1천만원초과</p> <p>4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20</p> <p>4천만원초과 672만원+4천만원초과</p> <p>8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30</p> <p>8천만원초과 1천872만원+8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40</p> <p>제60조(신고납부 등)</p> <p>③----- ----- ----- -----</p> <p>-----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p>